

NEWSLETTER

November 2020

공정거래 그룹 Antitrust & Competition Group

CONTACT



변호사정 화

T:02.772.4940 E:hwj@leeko.com



변호사 김지훈

T:02.772.5978 E:jhg@leeko.com

「자료의 열람・복사 업무지침」 제정(안) 행정예고

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, 피심인의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·복사 요구권과 관련하여 자료 제출자의 동의가 있거나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심인에게도 열람·복사를 허용한다고 정하고 있으나(법제52조의2), 열람·복사를 요구하는 구체적 방법 및 공정거래위원회(공정위)의 결정기준 등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.

이에 공정위는 증거자료에 대한 열람 · 복사의 방법 및 절차를 상세히 규정한 「자료의 열람 · 복사 업무지침」 제정안(본지침안)을 마련하여, 2020. 11. 22.까지의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본 지침안을 확정 · 시행할 계획입니다.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.

I. 주요 제정 내용

- 1. 피심인의 열람 · 복사 요구권 보장 및 그 절차
 - 심사보고서에서의 비공개 자료에 대한 열람 · 복사 요구서 제출
 - 열람·복사를 요구하는 자료 및 그 사유, 제한적 자료 열람 시 열람 필요 기간 및 열람할 자의 인적사항 등을 기재한 열람·복사 요구서 제출
 - 피심인이 제출한 요구서가 불충분한 경우 공정위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날부터 5일 이내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열람 · 복사불허 가능

■ 자료 제출자에 대한 의견 조회

■ 자료 제출자에게 피심인에 대한 자료 공개에 동의하는지, 동의하지 않는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의견제출기회부여

■ 주심위원 등의 열람·복사 허용 여부 결정

■ 피심인이 공정위에 열람·복사를 요구한 날부터 30일 이내(10일의 범위에서 연장 가능) 결정하고,지체없이 그 결정사항을 피심인 및 자료 제출자에게 통지함

열람 · 복사 대상 자료 유형	공개 여부
영업비밀자료	■ 자료제출자동의 O: 완전공개
	■ 자료제출자동의 X: 제한적 자료열람
자진신고자료	■ 자료제출자동의 O: 완전공개
	■ 자료제출자동의 X: 비공개
다른 법률 비공개 자료	■ (자료제출자동의 있더라도) 비공개 가능
그 밖의 자료	■ 완전 공개

2. 제한적 자료열람실(Data Room) 도입을 통한 영업비밀 보호

■ "제한적 자료열람"이란, 공정위가 열람의 주체, 일시, 장소, 방법 등을 정하여 제한된 상태에서 영업비밀 자료를 열람하게 하는 방식을 의미함

제한적 자료열람 방식

- 제한적 열람 주체: 피심인에 소속되지 않은 피심인 대리인(외부 변호사)에 한함
- **제한적 열람 일시:** 최대 2주 이내의 범위 내에서 주심위원이 정한 일시 (열람·복사 허용 결정이 있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시되어야함)
- 제한적 열람 장소: 주심위원 등이 정하는 공정위 내 제한적 자료열람실
- 제한적 열람 방법
 - 자료열람실 이용규칙 준수 서약서 및 비밀유지서약서 제출
 - 제한적 자료 열람자는 ① 제한적 자료열람실에서 증거의 존재 및 내용을 확인하고 ② 증거와 행위사실간의 관련성 및 심사보고서에 담긴 정량 분석의 정확성 등을 검증할 수 있으며③ 검증한결과를 토대로 열람보고서 작성 가능함
 - 위 열람보고서에는 영업비밀이 직접 기재될 수 없으며, 주심위원 등은 영업비밀이 포함되지 않았음이 확인되면 열람기간이 종료된 후 7일 이내 열람보고서를 피심인에게 발송
 - 위 열람보고서만이 유일하게 제한적 자료열람실 밖으로의 반출 허용됨
- 영업비밀 자체를 다퉈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
 - 자료 열람한 외부 변호사가 영업비밀을 직접 기재한 비공개 열람보고서 작성하여 공정위에 제출 가능 (비공개 열람보고서는 공정위 위원 및 소속 공무원에게만 공개됨)
 - 주심위원 등은 비공개 열람보고서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,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심사관, 제한적 자료 열람자, 자료 제출자 등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음 (피심인 등 그 외 사람들은 참석 불가)

3. 비밀유지의무 부과 및 위반시 제재

- (열람자의 비밀유지의무) 제한적 자료 열람 시 자료를 열람한 피심인의 대리인은 피심인을 포함하여 누구에게도 영업비밀을 누설할 수 없음
- (위반시 제재) ① 공정위는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에 징계 요구하고,② 공정위 공무원은 비밀유지의무 위반자와의 5년간 접촉 금지됨

II. 시사점

본 지침안의 제정으로, 피심인들은 심의 전 단계에서 심사보고서에서 공개되지 않은 자료들을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 특히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,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를 활용하여 피심인의 대리인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해지면서 공정위심의절차에 더욱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.

다만 위와 같은 제한적 자료 열람 제도에도 불구하고, 피심인의 대리인만 열람 가능하도록 하면서 열람보고서에 기재 가능한 내용 및 그 범위 등이 불명확한 측면이 있는바, 실제 운용 과정에서 피심인의 방어권이 충분하게 보장될 수 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 가령 영업비밀자료라고 하더라도 열람 주체에 대한 추적 가능한 장치를 마련하여 열람/복사를 허용한 후 일정 기간 내에 자료를 폐기하도록 하고, 그에 대한 확인 조치를 하는 등과 같은 절차를 마련한다면, 피심인의 대리인 외 다른 전문가(경제학자) 또한 해당 자료에 대한 접근이 가능할 수 있고, 보다 피심인의 방어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주는 결과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.

위 내용을 업무에 참고하시기를 바라며, 관련 자문 등에 관하여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 언제든지 법무법인(유) 광장 공정거래그룹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의 내용에 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단 연락처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.

이 뉴스레터는 일반적인 정보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된 것으로서, 법무법인(유) 광장의 공식적인 견해나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. 법무법인(유) 광장에서 발송하는 뉴스레터를원하지 않으시면 [수신거부]를 클릭해 주십시오.

Lee KO 법무법인(유) 광장 뉴스레터 더 보기

COVID-19 자료실

서울시 중구 남대문로 63 한진빌딩(우 04532) │ Tel: 02-772-4000 │ Fax: 02-772-4001/2 │ www.leeko.com